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49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이종배·서지영·김소희

이종욱 · 김용태 · 이만희

김성원 · 성일종 · 강승규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 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재계약 거절 등의 사유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 및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임대차계약 해제·해지나 재

계약 거절 가능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 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1항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른 임차인에게 반복·상습적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공 |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
| 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 |
|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 | |
| 절할 수 있다.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8. 다른 임차인에게 반복·상습 |
| | 적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 |
| | <u>상 피해를 준 경우</u>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